【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갱신시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 자동 계약 연장하여 서비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 비용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관이 따로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행복한재가복지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이용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전액을 감경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기초수급권자	0%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4)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

⑤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인 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받으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한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⑦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 방문목욕 수가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8,690	86,480	77,970

방문요양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방문요양)	금액(원)	구 분(방문목욕)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차량이용 60분이상	86,48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60분이상	77,97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차량미이용	48,690
180분 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3)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라.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때

(3)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위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자 계약해지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마. 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①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